

제8장 이용계약

제66조 [계약목적]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한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리, 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7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하여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68조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순효노인요양원(이하 “갑”이라 한다)은 요양등급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며, 일반입소자는 1년 단위로 하되 요양등급이 나온 경우 재계약 한다.

제69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7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
 2.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3.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질병, 병세,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4.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
 5.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6.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7. 신원 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
 8. 신원 인수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1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등급판정결과의 급여수가를 따르며 별도의 입소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분		금액	내역	부담주체
급여		월 이용금액의 80%	이용자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공단부담
		월 이용금액의 88%	이용자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월 이용금액의 92%	이용자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월 이용금액의 20%	이용자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자부담
		월 이용금액의 12%	이용자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월 이용금액의 8%	이용자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 적용	
비급여	식재료비	1일 9,000원	1식 3,000원 일일 3식	자부담
	간식비	1일 2,000원	일일 2회	
	이미용비	1회 10,000원	월 1회	

2.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이 면제되며 감경대상자는 급여비용의 자부담 중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3. 급여비용 외 의료용품비, 개별프로그램이용료, 상급침실 이용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72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이용료 중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에 따르며 비급여비용은 물가의 변동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식재료비, 상급침실 사용, 이·미용서비스, 개별프로그램비용 등)은 계약에 의해 결정하고 제공한다.
2.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요양원에서 결정한다.

제73조 [계약해제] 요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신상정보 등 요양보호에 필요한 정보 등)
2. 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음주, 흡연, 문란행위, 폭력, 폭언 등)
3.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5. 질병의 호전으로 인정등급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6. 기타 계약서에 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